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부록 1-1 限)  
(개발 검증)



2026. 02.

기관규칙개발팀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부록 1-1 개정〉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CS0, CS1, CS2, CS3 (2020)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운용하는 선박
CS READY (2019)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갖춘 선박
AL1, AL2, AL3, AL4, AL5 (2019)	자율운항선박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율화시스템을 갖춘 선박
CSAP (2019)	지침 7편 부록 7-11에서 규정하는 갑판 상 컨테이너 고박을 위한 안전한 작업조건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
FTS (2019)	지침 5편 6장 부록 5-13의 요건에 따라 연료유처리시스템을 설치한 선박
ISPM(0), ISPM(1), ISPM(2), ISPM(3) (2020)	통합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갖춘 선박
PID, MID (2023)	감염병 확산 방지 설계 선박 지침에서 규정하는 선내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 (PID : Prevention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MID: Mitigation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RP1, RP2, RP1-S, RP2-S	지침 5편 부록 5-10에서 규정하는 복수 추진 및 조타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ESA1, ESA2 (2022)	지침 5편 부록 5-12-1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축계정렬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 (Enhanced Shaft Alignment)
ESA-iSG, ESA1-iSG, ESA2-iSG (2026)	지침 5편 부록 5-12-2에서 규정하는 직결형 축발전기(in-line type Shaft Generator)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하는 경우 지침 5편 부록 5-12-1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축계정렬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D(A) (2022)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에 따라 메틸 알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한 선박 (Approval in principle)
	Methanol and Ethanol Ready D(A)   메틸 알코올 및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Methanol Ready D(A)   메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Ethanol Ready D(A)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D (2022)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에 따라 메틸 알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선박 (Design)
	Methanol and Ethanol Ready D   메틸 알코올 및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Methanol Ready D   메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Ethanol Ready D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I (SR, FT, TV, FS, BS, ME, AE, ME-C, AE-C) (2022)	<p><b>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b>에 따라 메틸 알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설설계를 수행하고 설치한 선박 (I : partail Installation)</p> <table border="1" data-bbox="384 255 1278 409"> <tr> <td data-bbox="384 255 746 327">Methanol and Ethanol Ready I</td> <td data-bbox="746 255 1278 327">메틸 알코올 및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td> </tr> <tr> <td data-bbox="384 327 746 365">Methanol Ready I</td> <td data-bbox="746 327 1278 365">메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td> </tr> <tr> <td data-bbox="384 365 746 409">Ethanol Ready I</td> <td data-bbox="746 365 1278 409">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td> </tr> </table> <p>(SR : hull Structure Reinforcement for fuel tank            FT : Fuel Tank            TV : fuel Tank Venting systems            FS : Fuel Supply systems            BS : fuel Bunkering Systems            ME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Main Engines            AE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Auxiliary Engines            ME-C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Main Engine - Conversion            AE-C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Auxiliary Engines - Conversion)</p>	Methanol and Ethanol Ready I	메틸 알코올 및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Methanol Ready I	메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Ethanol Ready I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Methanol and Ethanol Ready I	메틸 알코올 및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Methanol Ready I	메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Ethanol Ready I	에틸 알코올 연료 준비수준에 적합한 선박						
Reduced Freeboard	<b>준설선 규칙 부록 1</b> 에서 규정하는 감소된 건현 지정을 받은 선박(2023)						
ETA (2025)	<b>규칙 4편 8장 205</b> .에 따라 비상예인장치를 설치한 선박						
LSN (2025)	<b>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4장</b> 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고박강도계산 프로그램이 설치 및 유지되는 선박 (Lashing Software for Nonstandardized cargo)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국문)

## 제1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적용지침〉 1편</b></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p> <p>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112 486 999 1465"> <thead> <tr> <th>선종</th> <th>특기사항</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6. Cargo Ship (2017)</td> <td>- HC<sup>(12-2)</sup> General Dry Cargo<sup>(15-1)</sup> Wood Chip Carrier<sup>(15-2)</sup> Cement Carrier<sup>(15-3)</sup> Livestock Carrier<sup>(15-4)</sup> Deck Cargo Ship<sup>(15-5)</sup> General Dry Cargo(Double Skin)<sup>(15-6)</sup> Liquid Cargo(Category OS only)<sup>(15-7)</sup> Container<sup>(15-8)</sup> (2019)</td> <td>(12-2): &lt;생략&gt; (15-1): &lt;생략&gt; (15-7): &lt;생략&gt; (15-8): 본선에 셀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b>지침 7편 부록 7-2</b>에 따라 승인된 컨테이너 고박설비 및 적재방법에 의해 컨테이너를 전반적으로 적재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예, 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td> </tr> </tbody> </table>	선종	특기사항	비고	6. Cargo Ship (2017)	- HC <sup>(12-2)</sup> General Dry Cargo <sup>(15-1)</sup> Wood Chip Carrier <sup>(15-2)</sup> Cement Carrier <sup>(15-3)</sup> Livestock Carrier <sup>(15-4)</sup> Deck Cargo Ship <sup>(15-5)</sup> General Dry Cargo(Double Skin) <sup>(15-6)</sup> Liquid Cargo(Category OS only) <sup>(15-7)</sup> Container <sup>(15-8)</sup> (2019)	(12-2): <생략> (15-1): <생략> (15-7): <생략> (15-8): 본선에 셀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b>지침 7편 부록 7-2</b> 에 따라 승인된 컨테이너 고박설비 및 적재방법에 의해 컨테이너를 전반적으로 적재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예, 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	<p style="text-align: center;"><b>〈적용지침〉 1편</b></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p> <p>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1039 486 1926 1465"> <thead> <tr> <th>선종</th> <th>특기사항</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6. Cargo Ship (2017)</td> <td>- HC<sup>(12-2)</sup> General Dry Cargo<sup>(15-1)</sup> Wood Chip Carrier<sup>(15-2)</sup> Cement Carrier<sup>(15-3)</sup> Livestock Carrier<sup>(15-4)</sup> Deck Cargo Ship<sup>(15-5)</sup> General Dry Cargo(Double Skin)<sup>(15-6)</sup> Liquid Cargo(Category OS only)<sup>(15-7)</sup> Container<sup>(15-8)</sup> (2019)  <u>OPEN-TOP(CC)(Hold Nos. a, b, ...)<sup>(15-9)</sup> (2025)</u>  <u>OPEN-TOP(Hold Nos. a, b, ...)<sup>(15-10)</sup> (2025)</u></td> <td>(12-2): &lt;현행과 동일&gt; (15-1): &lt;현행과 동일&gt; (15-7): &lt;현행과 동일&gt; (15-8): &lt;현행과 동일&gt;  (15-9) : <b>적용지침 3편 부록 3-6</b>에 따라 <b>하나 이상의 화물창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항해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 부기한다. (including Combustible Cargo)</b>  (15-10) : <b>OPEN-TOP(CC)(Hold Nos. a, b, ...)</b>를 부여함에 있어,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 <b>(CC)</b>를 제외하고, <b>OPEN-TOP(Hold Nos. a, b, ...)</b>로 부기한다.</td> </tr> </tbody> </table>	선종	특기사항	비고	6. Cargo Ship (2017)	- HC <sup>(12-2)</sup> General Dry Cargo <sup>(15-1)</sup> Wood Chip Carrier <sup>(15-2)</sup> Cement Carrier <sup>(15-3)</sup> Livestock Carrier <sup>(15-4)</sup> Deck Cargo Ship <sup>(15-5)</sup> General Dry Cargo(Double Skin) <sup>(15-6)</sup> Liquid Cargo(Category OS only) <sup>(15-7)</sup> Container <sup>(15-8)</sup> (2019)  <u>OPEN-TOP(CC)(Hold Nos. a, b, ...)<sup>(15-9)</sup> (2025)</u>  <u>OPEN-TOP(Hold Nos. a, b, ...)<sup>(15-10)</sup> (2025)</u>	(12-2): <현행과 동일> (15-1): <현행과 동일> (15-7): <현행과 동일> (15-8): <현행과 동일>  (15-9) : <b>적용지침 3편 부록 3-6</b> 에 따라 <b>하나 이상의 화물창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항해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 부기한다. (including Combustible Cargo)</b>  (15-10) : <b>OPEN-TOP(CC)(Hold Nos. a, b, ...)</b> 를 부여함에 있어,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 <b>(CC)</b> 를 제외하고, <b>OPEN-TOP(Hold Nos. a, b, ...)</b> 로 부기한다.	
선종	특기사항	비고												
6. Cargo Ship (2017)	- HC <sup>(12-2)</sup> General Dry Cargo <sup>(15-1)</sup> Wood Chip Carrier <sup>(15-2)</sup> Cement Carrier <sup>(15-3)</sup> Livestock Carrier <sup>(15-4)</sup> Deck Cargo Ship <sup>(15-5)</sup> General Dry Cargo(Double Skin) <sup>(15-6)</sup> Liquid Cargo(Category OS only) <sup>(15-7)</sup> Container <sup>(15-8)</sup> (2019)	(12-2): <생략> (15-1): <생략> (15-7): <생략> (15-8): 본선에 셀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b>지침 7편 부록 7-2</b> 에 따라 승인된 컨테이너 고박설비 및 적재방법에 의해 컨테이너를 전반적으로 적재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예, 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												
선종	특기사항	비고												
6. Cargo Ship (2017)	- HC <sup>(12-2)</sup> General Dry Cargo <sup>(15-1)</sup> Wood Chip Carrier <sup>(15-2)</sup> Cement Carrier <sup>(15-3)</sup> Livestock Carrier <sup>(15-4)</sup> Deck Cargo Ship <sup>(15-5)</sup> General Dry Cargo(Double Skin) <sup>(15-6)</sup> Liquid Cargo(Category OS only) <sup>(15-7)</sup> Container <sup>(15-8)</sup> (2019)  <u>OPEN-TOP(CC)(Hold Nos. a, b, ...)<sup>(15-9)</sup> (2025)</u>  <u>OPEN-TOP(Hold Nos. a, b, ...)<sup>(15-10)</sup> (2025)</u>	(12-2): <현행과 동일> (15-1): <현행과 동일> (15-7): <현행과 동일> (15-8): <현행과 동일>  (15-9) : <b>적용지침 3편 부록 3-6</b> 에 따라 <b>하나 이상의 화물창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항해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 부기한다. (including Combustible Cargo)</b>  (15-10) : <b>OPEN-TOP(CC)(Hold Nos. a, b, ...)</b> 를 부여함에 있어,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 <b>(CC)</b> 를 제외하고, <b>OPEN-TOP(Hold Nos. a, b, ...)</b> 로 부기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선종	특기사항	비고	선종	특기사항	비고	
11. Container Ship <sup>(20)</sup>	LS <sup>(20-1)</sup> LS(CL) <sup>(20-2)</sup> LS(CL, RS) <sup>(20-3)</sup> LS(CL, RS+) <sup>(20-4)</sup> LS(HHS 또는 HHT) <sup>(20-5)</sup> (2023)	(20) : <생략> (20-1) : <생략> (20-2) : <생략> (20-3) : <생략> (20-4) : <생략> (20-5) :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제25절 2504 또는 2505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된 컨테이너 고박설비를 적용한 선박에 부기한다. (2022)	11. Container Ship <sup>(20)</sup>	LS <sup>(20-1)</sup> LS(CL) <sup>(20-2)</sup> LS(CL, RS) <sup>(20-3)</sup> LS(CL, RS+) <sup>(20-4)</sup> LS(HHS 또는 HHT) <sup>(20-5)</sup> (2023)  <u>OPEN-TOP(CC)(Hold Nos. a, b, ...)</u> <sup>(20-6)</sup> (2025)  <u>OPEN-TOP(Hold Nos. a, b, ...)</u> <sup>(20-7)</sup> (2025)	(20) : <현행과 동일> (20-1) : <현행과 동일> (20-2) : <현행과 동일> (20-3) : <현행과 동일> (20-4) : <현행과 동일> (20-5) : <현행과 동일>  (20-6) : <u>적용지침 3편 부록 3-6에 따라 하나 이상의 화물창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항해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 부기한다. (including Combustible Cargo)</u>  (20-7) : <u>OPEN-TOP(CC)(Hold Nos. a, b, ...)</u> 를 부여함에 있어,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 (CC)를 제외하고, <u>OPEN-TOP(Hold Nos. a, b, ...)</u> 로 부기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외부의견 조회용)



July 2025

선체규칙개발팀

## - 주요 개정 내용 -

(1) 2025.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소급적용**

●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요건 추가

(2) 2026.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QSCS관련

- IACS PR42(Rev.1 Nov 2024) 등 반영

● IACS PR1A(Rev.10 Oct. 2024) 반영

- 선급이전과 관련하여, 여객선에 대한 추가의 도면/자료요건 추가

(3)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대상부위와 관련 횡단면 형상 개정

● “**규칙**”을 “**선급기술규칙**”으로 수정

(1) 2025.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소급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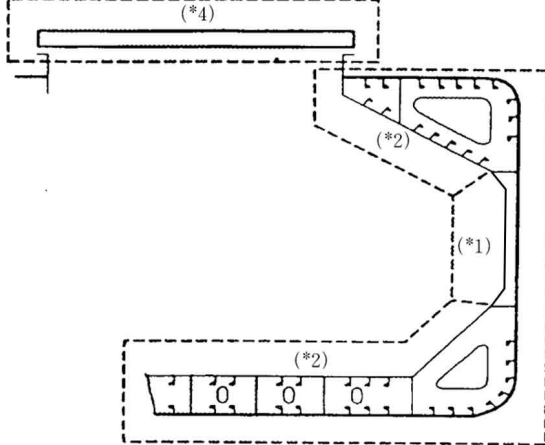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3)</b></p> <p>302., 304., 306., 및 309. &lt;생략&gt;</p> <p>&lt;세로게 추가&gt;</p> <p>&lt;이하 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3)</b></p> <p>302., 304., 306., 및 309. &lt;현행과 동일&gt;</p> <p><u>311.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2025)</u></p> <p><u>1. 자체 선급기술규칙에서 허용하는 다른 요건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u></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기자재팀의 개정요청 공문 (MET4600-449-2024, 9 Dec. 2024) 및 이후 후속 에 쪽지(on 19 Dec. 2024)에 의거 : IACS PR1B(Rev..7 June 2024/42(New June 2024) 시행에 따른 대응</p> <p>- 심의회의 후 기자재팀의 최종의견 반영</p>

(2) 2026.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b></p> <p><b>401. 제조후등록검사 (2023) 【규칙 참조】</b></p> <p>1. ~ 2. &lt;생략&gt;</p> <p>3. 선급이전(TOC)되는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검사항목은 규칙 401. 및 상기 1항 및 2항을 적용한다.</p> <p>단,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u>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u>으로부터 개조나 변경이 없이 선급이전(TOC)되는 선령 5년 미만의 여객선의 경우 아래의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2022)</p> <p>(1) ~ (4) &lt;생략&gt;</p> <p>4. 등록신청을 하기 전 5년의 어느 일부 기간 동안에 선박이, 우리선급 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u>품질시스템 인증체계(QSCS)의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u>에 등록되었었고 탈급 후 개조나 변경이 없을 경우, 검사요건은 특별히 고려할 수 있으나 다음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2019)</p> <p>(1) &lt;생략&gt;</p> <p>(2)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u>품질시스템 인증체계(QSCS)의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u>에 등록되었던 선박의 경우, 적용지침 403.(선급이전) 요건과 동일한 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b></p> <p><b>401. 제조후등록검사 (2023) 【규칙 참조】</b></p> <p>1. ~ 2. &lt;현행과 동일&gt;</p> <p>3. 선급이전(TOC)되는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검사항목은 규칙 401. 및 상기 1항 및 2항을 적용한다.</p> <p>단, 국제선급연합회(IACS)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으로부터 개조나 변경이 없이 선급이전(TOC)되는 선령 5년 미만의 여객선의 경우 아래의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2026)</p> <p>(1) ~ (4) &lt;현행과 동일&gt;</p> <p>4. 등록신청을 하기 전 5년의 어느 일부 기간 동안에 선박이, 우리선급 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었었고 탈급 후 개조나 변경이 없을 경우, 검사요건은 특별히 고려할 수 있으나 다음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2026)</p> <p>(1) &lt;현행과 동일&gt;</p> <p>(2) 국제선급연합회(IACS)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었던 선박의 경우, 적용지침 403.(선급이전) 요건과 동일한 검사 (2026)</p>	<p>- IACS PR42 (Rev. 1 Nov. 2024)의 Application 등 반영</p> <p>- "QSCS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을 개정안과 같이 Section 5에 적합한 선급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IACS 회원자격이 박탈된 RS(러시아 선급) 등록선이 IACS 선급에 선급이전(TOC)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절차(UR, PR 등)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 (by 국제업무팀)</p> <p>: "QSCS"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20) <b>【규칙 참조】</b></p> <p>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한 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p> <p>1. 제출도면 및 자료 (2020)</p> <p>(1) ~ (3) &lt;생략&gt;</p> <p>(4) 유조선인 경우 선수미단의 펌핑장치도 및 코퍼맴과 펌프실의 배수장치도 <u>&lt;새롭게 추가&gt;</u></p> <p>(5) ~ (8) &lt;생략&gt;</p> <p>&lt;이하 생략&gt;</p> <p><b>&lt;참고&gt;</b> Additional plans/documents required for passenger ships</p> <p>(A) Fire control drawings</p> <p>(B) Drawings of structural fire protection <b>(including passive fire protection)</b></p> <p>(C) HVAC line diagrams and ducting arrangements</p> <p>(D) In case of ro-ro passenger ships, plans and documents related to fixed and movable ramps.</p> <p>8편(방화 및 소화), 1장 102. 도면 및 자료</p> <p>1. 공사 착수 전에 다음 도면 및 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p> <p>1) <b>방화구조도</b> (방화구조 및 개구부 폐쇄장치 등 배치 상세)</p> <p>3) <b>화재제어도</b>로써 제어장소, “A”급 구획으로 폐워된 각종 화재구역,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의 상세와 “B”급 구획으로 폐워된 장소, 스프링클러장치, 소화설비, 다른 구획 및 갑판 등으로 접근수단, 그리고 통풍장치(통풍기제어장소, 댐퍼의 위치 및 각 구역용 통풍기의 식별번호 상세 포함)에 대한 상세를 각 갑판별로 명시한 도면</p> <p>적용지침 8편 7장 1절 103. 3 (4)에는 “가동식(movable) 램프”로 언급되어 있음</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20) <b>【규칙 참조】</b></p> <p>국제선급연합회(IACS)의 <b>품질시스템 인증제도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QSCS 수준</b>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 <u>(2026)</u></p> <p>1. 제출도면 및 자료 (2020)</p> <p>(1) ~ (3) &lt;현행과 동일&gt;</p> <p>(4) 유조선인 경우 선수미단의 펌핑장치도 및 코퍼맴과 펌프실의 배수장치도 <u>(5) 여객선에 대한 추가자료 (2026)</u></p> <p><u>(가) 화재제어도</u></p> <p><u>(나) 방화구조도</u></p> <p><u>(다) 공기조화장치(HVAC)도 및 통풍장치 배치도</u></p> <p><u>(라) 로로여객선의 경우, 고정식 및 가동식(movable) 램프와 관련된 도면이나 자료</u></p> <p><b>(6) (5) ~ (9) (8)</b> &lt;현행과 동일&gt;</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IACS PR42 (Rev. 1 Nov. 2024)의 Application 등 반영</p> <p>: <b>“QSCS”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b></p> <p>- IACS PR1A (Rev. 10 Oct. 2024)의 Section C.7 반영.</p> <p><b>* Active Fire Protection (AFP)</b> : An AFP system requires an action to detect, respond to, contain, or suppress a fire.</p> <p>- AFP examples : <b>Smoke detectors, Sprinkler systems, Fire Extinguishers &amp; Fire Hydrants etc.</b></p> <p><b>* Passive Fire Protection (PFP)</b> systems protect a <b>building</b> against fire without needing a specific operational action.</p> <p>- PFP examples : <b>Fire doors, Fire/Smoke dampers, Fire Resistant Glass &amp; Photoluminescent Exit Lights etc.</b></p> <p><b>* Source : IMPACT FIRE</b></p>

(3-1)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위</b></p> <p>1. 규칙 표 1.2.8, 표 1.3.1, 표 1.3.4, 표 1.3.7, 표 1.3.10 및 표 1.3.13에서 정하는 일반건화물선, 산적화물선, 유조선,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 이중선체 유조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 <p>(2) ESP 부호를 갖는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대상부위</p> <p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p> <p>비고 (*1)부터 (*5)는 규칙 표 1.3.1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하 생략&gt;</p> <p>&lt;참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CS UR Z10.2 : Hull Surveys of Bulk Carriers</li> <li>- IACS UR Z10.5 : Hull Surveys of Double Skin Bulk Carrier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위</b></p> <p>1. 규칙 표 1.2.8, 표 1.3.1, 표 1.3.4, 표 1.3.7, 표 1.3.10 및 표 1.3.13에서 정하는 일반건화물선, 산적화물선, 유조선,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 이중선체 유조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 <p>(2) ESP 부호를 갖는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대상부위 <u>(2026)</u></p> <p>(횡단면 형상)</p>  <p style="text-align: center;">&lt;현행과 동일&gt;</p> <p>비고 (*1)부터 (*5)는 규칙 표 1.3.1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자체식별</p> <p>: 현행의 횡단면 형상은 IACS UR Z10.2, ANNEX II, Sheet 14를 반영했지만, 선측이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형상처럼 보여서 <u>Side shell frame 형상으로 개정함.</u></p>

# (3-2)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규칙”을 “선급기술규칙”으로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3)</b></p> <p>302. 도면승인 【규칙 참조】</p> <p>2. 제출도면의 생략 및 추가</p> <p>(1) 동형선을 건조하는 경우 제출도면을 생략할 때에는 승인도면 생략 신청서와 다음의 도면을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2022)</p> <p>(차) 승인도면에 대한 <u>적용규칙</u>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도면</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 (2023)</b></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20) 【규칙 참조】</p> <p>4. 등록검사</p> <p>(1) 선급이전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p> <p>(가)</p> <p>(b) 기관 등록검사</p> <p>(vi) 재순환 및 결빙 제거장치가 해당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빙구조에 대한 선급부호를 요구한 경우)</p> <p>(ix) 유조선의 경우 화물유 장치 및 위험구역내의 전기장치에 대하여 해당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유조선</b></p> <p>304. 정기검사 (2023)</p> <p>1. 규칙 304.의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장의 관리 하에 시행하는 화물탱크 주위 벽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규칙 참조】</p> <p>(6) 화물탱크에 면하는 주위 벽을 가지는 평형수탱크는 <u>관련 규칙</u>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3)</b></p> <p>302. 도면승인 【규칙 참조】</p> <p>2. 제출도면의 생략 및 추가</p> <p>(1) 동형선을 건조하는 경우 제출도면을 생략할 때에는 승인도면 생략 신청서와 다음의 도면을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2022)</p> <p>(차) 승인도면에 대한 적용 <u>선급기술</u>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도면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 (2023)</b></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20) 【규칙 참조】</p> <p>4. 등록검사</p> <p>(1) 선급이전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p> <p>(가)</p> <p>(b) 기관 등록검사</p> <p>(vi) 재순환 및 결빙 제거장치가 해당 <u>선급기술</u>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빙구조에 대한 선급부호를 요구한 경우) (2026)</p> <p>(ix) 유조선의 경우 화물유 장치 및 위험구역내의 전기장치에 대하여 해당 <u>선급기술</u>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유조선</b></p> <p>304. 정기검사 (2023)</p> <p>1. 규칙 304.의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장의 관리 하에 시행하는 화물탱크 주위 벽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규칙 참조】</p> <p>(6) 화물탱크에 면하는 주위 벽을 가지는 평형수탱크는 관련 <u>선급기술</u>규칙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u>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u>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3 검사계획서 및 검사계획질의서 작성 예</b></p> <p>표 1 검사계획서 작성 예</p> <p><b>1. Preamble</b></p> <p>1.1 Scope</p> <p>1.1.1 The present survey programme covers the minimum extent of Overall Surveys, Close-up Surveys, thickness measurements and pressure testing within the cargo (length) area, cargo holds/tanks, ballast tanks, including fore and aft peak tanks, required by the <u>Rules</u>.</p> <p>1.2 Documentation</p> <p>All documents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urvey programme are to be available onboard during the survey as required by the relevant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u>Rules</u>.</p> <p><b>7. Survey requirements</b></p> <p><b>7.1 Overall Survey (2022)</b></p> <p>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spaces that are to undergo an Overall Survey for the ship in accordance with the <u>Rules</u>.</p> <p><b>7.2 Close-up Survey (2022)</b></p> <p>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hull structures that are to undergo a Close-up Survey for the ship in accordance with the <u>Rules</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3 검사계획서 및 검사계획질의서 작성 예</b></p> <p>표 1 검사계획서 작성 예</p> <p><b>1. Preamble</b></p> <p>1.1 Scope</p> <p>1.1.1 The present survey programme covers the minimum extent of Overall Surveys, Close-up Surveys, thickness measurements and pressure testing within the cargo (length) area, cargo holds/tanks, ballast tanks, including fore and aft peak tanks, required by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i>(2026)</i></p> <p>1.2 Documentation</p> <p>All documents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urvey programme are to be available onboard during the survey as required by the relevant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i>(2026)</i></p> <p><b>7. Survey requirements</b></p> <p><b>7.1 Overall Survey (2022)</b></p> <p>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spaces that are to undergo an Overall Survey for the ship in accordance with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i>(2026)</i></p> <p><b>7.2 Close-up Survey (2022)</b></p> <p>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hull structures that are to undergo a Close-up Survey for the ship in accordance with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i>(2026)</i></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b>8. Identification of tanks for tank testing and pipes for pipe testing</b>  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cargo holds and tanks that are to undergo tank testing for the ship and the pipes that are to undergo pipe testing(for chemical tankers) in accordance with the <u>Rules</u>.</p> <p><b>9. Identification of areas and sections for thickness measurements</b>  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areas and sections where thickness measurements are to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u>Rules</u>.</p> <p><b>16. Appendices</b>  <b>Appendix 1 – List of plans</b>  The <u>Rules</u> require that main structural plans of cargo holds/tanks and ballast tanks (scantling drawings), including information regarding use of high tensile steel (HTS), clad steel and stainless steel(for chemical tankers) are to be available. This appendix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main structural plans which form part of the survey programme.</p> <p><b>Table 2 Example of the Survey Planning Questionnaire</b>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enable the Owner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to develop a survey programm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u>Rules</u>. It is essential that the Owner provides, when completing the present questionnaire, up-to-date information. The present questionnaire, when completed, is to provide all information and material required by the <u>Rules</u>.</p>	<p><b>8. Identification of tanks for tank testing and pipes for pipe testing</b>  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cargo holds and tanks that are to undergo tank testing for the ship and the pipes that are to undergo pipe testing(for chemical tankers) in accordance with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2026)</p> <p><b>9. Identification of areas and sections for thickness measurements</b>  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areas and sections where thickness measurements are to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2026)</p> <p><b>16. Appendices</b>  <b>Appendix 1 – List of plans</b>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require that main structural plans of cargo holds/tanks and ballast tanks (scantling drawings), including information regarding use of high tensile steel (HTS), clad steel and stainless steel(for chemical tankers) are to be available. This appendix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list the main structural plans which form part of the survey programme. (2026)</p> <p><b>Table 2 Example of the Survey Planning Questionnaire</b>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enable the Owner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to develop a survey programm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It is essential that the Owner provides, when completing the present questionnaire, up-to-date information. The present questionnaire, when completed, is to provide all information and material required by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b></p> <p>1. 일반  (2) 두께계측 범위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표준 두께계측의 범위는 <b>표 4</b>부터 <b>표 13</b>에 따른다. 다만, 도장상태 및 부식상태에 따라 두께계측 범위를 증감할 수 있다.</p> <p><b>표 1 부재별 쇠모한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th> <th rowspan="2" style="width: 15%;">부재명칭</th> <th colspan="3" style="width: 75%;">쇠모한도</th> </tr> <tr> <th style="width: 25%;">분류 I<sup>1)</sup></th> <th style="width: 25%;">분류 II<sup>1)</sup></th> <th style="width: 25%;">분류 III<sup>1)</sup></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국 부 쇠 모 한 도</td> <td colspan="4">(비고)</td> </tr> <tr> <td colspan="4">1) 제조중등등록선박인 경우 : 분류 I, 분류 II 및 분류 III에 대한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td> </tr> <tr> <td colspan="4">(가) 분류 I :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td> </tr> <tr> <td colspan="4">(나) 분류 II : 분류 I 및 분류 III에 속하지 않는 선박</td> </tr> <tr> <td colspan="4">(다) 분류 III : <b>고속경구조선규칙</b> 및 <b>고속경구조선규칙 적용지침</b>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제로 되어 있는 선박</td> </tr> <tr> <td colspan="4">4) 원래두께라 함은 도면상의 두께를 말한다. 단,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u>규칙</u>에서 요구하는 두께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2025)</td> </tr> </tbody> </table>		부재명칭	쇠모한도			분류 I <sup>1)</sup>	분류 II <sup>1)</sup>	분류 III <sup>1)</sup>	국 부 쇠 모 한 도	(비고)				1) 제조중등등록선박인 경우 : 분류 I, 분류 II 및 분류 III에 대한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I :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				(나) 분류 II : 분류 I 및 분류 III에 속하지 않는 선박				(다) 분류 III : <b>고속경구조선규칙</b> 및 <b>고속경구조선규칙 적용지침</b> 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제로 되어 있는 선박				4) 원래두께라 함은 도면상의 두께를 말한다. 단,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u>규칙</u> 에서 요구하는 두께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2025)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b></p> <p>1. 일반  (2) 두께계측 범위  <u>선급기술</u>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표준 두께계측의 범위는 <b>표 4</b>부터 <b>표 13</b>에 따른다. 다만, 도장상태 및 부식상태에 따라 두께계측 범위를 증감할 수 있다. (2026)</p> <p><b>표 1 부재별 쇠모한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th> <th rowspan="2" style="width: 15%;">부재명칭</th> <th colspan="3" style="width: 75%;">쇠모한도</th> </tr> <tr> <th style="width: 25%;">분류 I<sup>1)</sup></th> <th style="width: 25%;">분류 II<sup>1)</sup></th> <th style="width: 25%;">분류 III<sup>1)</sup></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국 부 쇠 모 한 도</td> <td colspan="4">(비고)</td> </tr> <tr> <td colspan="4">1) 제조중등등록선박인 경우 : 분류 I, 분류 II 및 분류 III에 대한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td> </tr> <tr> <td colspan="4">(가) 분류 I :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td> </tr> <tr> <td colspan="4">(나) 분류 II : 분류 I 및 분류 III에 속하지 않는 선박</td> </tr> <tr> <td colspan="4">(다) 분류 III : <b>고속경구조선규칙</b> 및 <b>고속경구조선규칙 적용지침</b>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제로 되어 있는 선박</td> </tr> <tr> <td colspan="4">4) 원래두께라 함은 도면상의 두께를 말한다. 단,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u>선급기술</u> 규칙에서 요구하는 두께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2026)</td> </tr> </tbody> </table>		부재명칭	쇠모한도			분류 I <sup>1)</sup>	분류 II <sup>1)</sup>	분류 III <sup>1)</sup>	국 부 쇠 모 한 도	(비고)				1) 제조중등등록선박인 경우 : 분류 I, 분류 II 및 분류 III에 대한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I :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				(나) 분류 II : 분류 I 및 분류 III에 속하지 않는 선박				(다) 분류 III : <b>고속경구조선규칙</b> 및 <b>고속경구조선규칙 적용지침</b> 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제로 되어 있는 선박				4) 원래두께라 함은 도면상의 두께를 말한다. 단,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u>선급기술</u> 규칙에서 요구하는 두께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2026)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부재명칭	쇠모한도																																																																
	분류 I <sup>1)</sup>	분류 II <sup>1)</sup>		분류 III <sup>1)</sup>																																																																
국 부 쇠 모 한 도	(비고)																																																																			
	1) 제조중등등록선박인 경우 : 분류 I, 분류 II 및 분류 III에 대한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I :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																																																																			
	(나) 분류 II : 분류 I 및 분류 III에 속하지 않는 선박																																																																			
(다) 분류 III : <b>고속경구조선규칙</b> 및 <b>고속경구조선규칙 적용지침</b> 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제로 되어 있는 선박																																																																				
4) 원래두께라 함은 도면상의 두께를 말한다. 단,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u>규칙</u> 에서 요구하는 두께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2025)																																																																				
	부재명칭	쇠모한도																																																																		
		분류 I <sup>1)</sup>	분류 II <sup>1)</sup>	분류 III <sup>1)</sup>																																																																
국 부 쇠 모 한 도	(비고)																																																																			
	1) 제조중등등록선박인 경우 : 분류 I, 분류 II 및 분류 III에 대한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I :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																																																																			
	(나) 분류 II : 분류 I 및 분류 III에 속하지 않는 선박																																																																			
(다) 분류 III : <b>고속경구조선규칙</b> 및 <b>고속경구조선규칙 적용지침</b> 을 적용한 선박 중에서 강제로 되어 있는 선박																																																																				
4) 원래두께라 함은 도면상의 두께를 말한다. 단,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u>선급기술</u> 규칙에서 요구하는 두께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2026)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5.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유조선 또는 이중선체 유조선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 및 수리방법</p> <p>(3) 종강도가 부족한 경우의 추가계측  (나) 수리된 단면의 경계부분도 <u>규칙</u>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수리지역의 전방에 한 개 및 후방에 한 개의 횡단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추가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4) 유효한 수리방법  (가) <u>규칙</u>에 적합하기 위하여 시행된 신환 또는 보강의 범위는 (나)에 따라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8 예방정비제도 절차(PMS)</b>  (Planned Maintenance System Procedure : PMS)</p> <p>표 1 제출자료</p> <table border="1" data-bbox="118 853 945 1046"> <thead> <tr> <th>제출자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2) 정비보수계획서 (가) ~ (나) &lt;생략&gt;</td> <td>● 각 기기는 <u>규칙</u>에 의한 개방검사, 시험 및 계측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lt;생략&gt;</td> </tr> </tbody> </table> <p>4. 상태 감시(CM) 및 상태 기반 정비(CBM) (2019)</p> <p>(6) 검사  (가) 설치 검사  상태 감시 장치는 <u>우리 선급 규칙</u>에 따라 설치 및 검사되어야 하며, 일련의 기준 계측 값이 설치 검사 시에 확보되어야 한다.</p>	제출자료	비고	(2) 정비보수계획서 (가) ~ (나) <생략>	● 각 기기는 <u>규칙</u> 에 의한 개방검사, 시험 및 계측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생략>	<p>5.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유조선 또는 이중선체 유조선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 및 수리방법</p> <p>(3) 종강도가 부족한 경우의 추가계측  (나) 수리된 단면의 경계부분도 <u>선급기술</u>규칙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수리지역의 전방에 한 개 및 후방에 한 개의 횡단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추가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2026)</p> <p>(4) 유효한 수리방법  (가) <u>선급기술</u>규칙에 적합하기 위하여 시행된 신환 또는 보강의 범위는 (나)에 따라야 한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8 예방정비제도 절차(PMS)</b>  (Planned Maintenance System Procedure : PMS)</p> <p>표 1 제출자료</p> <table border="1" data-bbox="1008 853 1834 1046"> <thead> <tr> <th>제출자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2) 정비보수계획서 (가) ~ (나) &lt;생략&gt;</td> <td>● 각 기기는 <u>선급기술</u>규칙에 의한 개방검사, 시험 및 계측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td> </tr> </tbody> </table> <p>4. 상태 감시(CM) 및 상태 기반 정비(CBM) (2019)</p> <p>(6) 검사  (가) 설치 검사  상태 감시 장치는 <u>우리 선급 기술</u>규칙에 따라 설치 및 검사되어야 하며, 일련의 기준 계측 값이 설치 검사 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2026)</p>	제출자료	비고	(2) 정비보수계획서 (가) ~ (나) <생략>	● 각 기기는 <u>선급기술</u> 규칙에 의한 개방검사, 시험 및 계측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제출자료	비고									
(2) 정비보수계획서 (가) ~ (나) <생략>	● 각 기기는 <u>규칙</u> 에 의한 개방검사, 시험 및 계측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생략>									
제출자료	비고									
(2) 정비보수계획서 (가) ~ (나) <생략>	● 각 기기는 <u>선급기술</u> 규칙에 의한 개방검사, 시험 및 계측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0 복원성 적하지침기기</b></p> <p><b>3. 선박의 복원성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2021)</b></p> <p>(5) 기능적 요건  (가) 모든 형식의 복원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 요건</p> <p>(c) 형식 3 소프트웨어는 주어진 적재조건에서 적용되는 <u>규칙</u>에 따른 자동점검을 위해 선박의 양쪽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손상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2 제조중등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b></p> <p><b>1. 범위</b>  이 부록의 범위는 다음 주요활동을 포함한다.</p> <p>(1) 선체구조에 대한 <u>선급규칙</u> 및 관련 정부규정에 적용받는 선박의 부분에 대한 시험. 이는 승인된 관련도면에 따라 <u>선급규칙</u> 및 관련 정부규정에 적합하게 건조되었다는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p> <p>(3) 재료, 용접 및 조립을 포함한 선박건조에 적용되는 <u>선급규칙</u>에서 요구하는 검사/시험의 입회, 그리고 검사/시험항목, 방법 (예를 들면, 구조시험, 사수시험 또는 누설시험, 비파괴시험, 치수검증) 및 담당자의 설정</p> <p><b>4. 요원의 자격 및 감시</b></p> <p>(1) 선박이 승인도면을 사용하여 관련규칙 및 정부대행요건에 적합하게 건조되었는지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 PR5(Definition of Exclusive Surveyor and Non-Exclusive Surveyor and Procedure for Employment and Control of Non-Exclusive Surveyors)에 정의된 정검 사원이 2항 (3)호에 정의된 패트룰, 검토 및 입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0 복원성 적하지침기기</b></p> <p><b>3. 선박의 복원성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2021)</b></p> <p>(5) 기능적 요건  (가) 모든 형식의 복원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 요건</p> <p>(c) 형식 3 소프트웨어는 주어진 적재조건에서 적용되는 <u>선급기술</u>규칙에 따른 자동점검을 위해 선박의 양쪽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손상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u>(2026)</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2 제조중등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b></p> <p><b>1. 범위</b>  이 부록의 범위는 다음 주요활동을 포함한다.</p> <p>(1) 선체구조에 대한 <u>선급기술</u>규칙 및 관련 정부규정에 적용받는 선박의 부분에 대한 시험. 이는 승인된 관련도면에 따라 <u>선급기술</u>규칙 및 관련 정부규정에 적합하게 건조되었다는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u>(2026)</u></p> <p>(3) 재료, 용접 및 조립을 포함한 선박건조에 적용되는 <u>선급기술</u>규칙에서 요구하는 검사/시험의 입회, 그리고 검사/시험항목, 방법 (예를 들면, 구조시험, 사수시험 또는 누설시험, 비파괴시험, 치수검증) 및 담당자의 설정 <u>(2026)</u></p> <p><b>4. 요원의 자격 및 감시</b></p> <p>(1) 선박이 승인도면을 사용하여 관련 <u>선급기술</u>규칙 및 정부대행요건에 적합하게 건조되었는지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 PR5(Definition of Exclusive Surveyor and Non-Exclusive Surveyor and Procedure for Employment and Control of Non-Exclusive Surveyors)에 정의된 정검 사원이 2항 (3)호에 정의된 패트룰, 검토 및 입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u>(2026)</u></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5. 선체구조 검사</p> <p>(2) 조선소는 선박에 공급되는 재료 및 의장이 관련 선급규칙 및 정부대행요건에 따른 검사를 받고 건조 또는 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건조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원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여야 한다.</p> <p>7. 신조검사계획</p> <p>(3) 시작회의에서 합의된 활동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조선소에 요구하여야 하며 이들 변경사항은 검사계획서에 문서화되어야 한다.</p> <p>예를 들면, 조선소가 외주업체의 사용 또는 변경을 선택하거나, 또는 생산이나 검사방법, 규칙 및 규정,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응하기 위하여, 또는 심각한 부적합이나 기타결과에 따라 검사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p> <p>(4) 신조를 하는 동안의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이 시작회의에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선체구조의 제작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47 "건조 및 수리 품질기준(Shipbuilding and Repair Quality Standard)" 또는 제작/건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선급이 인정한 제작기준 (Recognized Fabrication Standard, RFS)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작업은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p>	<p>5. 선체구조 검사</p> <p>(2) 조선소는 선박에 공급되는 재료 및 의장이 관련 선급기술규칙 및 정부대행요건에 따른 검사를 받고 건조 또는 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건조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원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6)</p> <p>7. 신조검사계획</p> <p>(3) 시작회의에서 합의된 활동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조선소에 요구하여야 하며 이들 변경사항은 검사계획서에 문서화되어야 한다.</p> <p>예를 들면, 조선소가 외주업체의 사용 또는 변경을 선택하거나, 또는 생산이나 검사방법, 선급기술규칙 및 규정,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응하기 위하여, 또는 심각한 부적합이나 기타결과에 따라 검사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2026)</p> <p>(4) 신조를 하는 동안의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이 시작회의에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선체구조의 제작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47 "건조 및 수리 품질기준(Shipbuilding and Repair Quality Standard)" 또는 제작/건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선급이 인정한 제작기준 (Recognized Fabrication Standard, RFS)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작업은 선급기술규칙에 적합하게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 행

개정 사유

표 1 선제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1.4 (2021)	용접-표면의 불연속성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용접 및 NDE 방안서, NDE 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요구 안함		
1.5 (2021)	용접-불연속성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용접 및 NDE방안서, NDE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요구 안함		
2.4	정렬/조립/간격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요구 안함		
2.5 (2018)	정렬/조립 또는 용접배치에 취약한 지역 <sup>1)</sup> , (정의된 경우),에 대한 적합성				<생략>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승인된 도면 또는 기준, 조선소검사기록	해당되는 경우, 취약지역에 대한 승인도면		<생략>
3	강제작업공정, 예를 들면, 소조립, 블록, 대조립 및 메가블록조립, 선행탑재 및 탑재, 덮개판					승인도, 조선소 검사기록,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작업도(강제작업 부서용)			
8.4	주조품 및 단강품					승인도, 조선소검사기록,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작업도(강제작업부서용)	주조품 및 단강품 증서사본		

-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  
  
: 규칙 ⇒ 선급기술규칙

< 표 1 의 추 록 >

- 시작회의에서 합의된 활동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조선소에 요구하여야 하며 이들 변경사항은 검사계획서에 문서화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조선소가 외주업체의 사용 또는 변경을 선택하거나, 또는 생산이나 검사방법, 규칙 및 규정,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응하기 위하여, 또는 심각한 부적합이나 기타결과에 따라 검사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표 1 선제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1.4 (2021)	용접-표면의 불연속성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u>선급기술</u> 규칙, 용접 및 NDE 방안서, NDE 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u>(2026)</u>	요구 안함		
1.5 (2021)	용접-불연속성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u>선급기술</u> 규칙, 용접 및 NDE방안서, NDE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u>(2026)</u>	요구 안함		
2.4	정렬/조립/간격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u>선급기술</u> 규칙 <u>(2026)</u>	요구 안함		
2.5 (2018)	정렬/조립 또는 용접배치에 취약한 지역 <sup>1)</sup> , (정의된 경우),에 대한 적합성				<현행과 동일>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u>선급기술</u> 규칙, 승인된 도면 또는 기준, 조선소검사기록 <u>(2026)</u>	해당되는 경우, 취약지역에 대한 승인도면	<현행과 동일생략>	
3	강제작업공정, 예를 들면, 소조립, 블록, 대조립 및 메가블록조립, 선행탐재 및 탐재, 덮개판					승인도, 조선소 검사기록,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u>선급기술</u> 규칙, 작업도(강제작업부서용) <u>(2026)</u>			
8.4	주조품 및 단강품					승인도, 조선소검사기록,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u>선급기술</u> 규칙, 작업도(강제작업부서용) <u>(2026)</u>	주조품 및 단강품 증서사본		

-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

: 규칙 ⇒ 선급기술규칙

### < 표 1 의 추 록 >

- 시작회의에서 합의된 활동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조선소에 요구하여야 하며 이들 변경사항은 검사계획서에 문서화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조선소가 외주업체의 사용 또는 변경을 선택하거나, 또는 생산이나 검사방법, 선급기술규칙 및 규정,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용하기 위하여, 또는 심각한 부적합이나 기타결과에 따라 검사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2026)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2-2</b> <b>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요건</b></p> <p>1. 신조활동에 대한 검사 및 시험방안서</p> <p>1.1 조선소는 선박의 종류 및 설계를 고려하여 <u>우리 선급의 규칙</u>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계획서로 알려져 있는 문서화된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검사계획서는 시작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3. 선박건조철(SCF)</p> <p>3.1 &lt;생략&gt;</p> <p>3.1.1 다음의 설계특정정보가 선박건조철(SCF)에 포함되어야 한다:</p> <p>.3 구조상세 및 계산서를 포함하여 <u>규칙</u>을 대체한 방안.</p> <p>3.2 선박건조철은 신조시 3.1.1 및 3.1.2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sup>3)</sup> 되어야 하며 통상의 보관장소는 식별되어야 한다. (2018)</p> <p>&lt;생략&gt;</p> <p>(비고)</p> <p><sup>3)</sup> 검토란 신조검사의 마지막 절차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실시하는 선박건조철의 검사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부록 3.항 “선박건조철(SCF)”에서 요구하는 도면 과 서류 및</li> <li>- 선박건조철의 도면/문서 목록에 따라 조선소가 본선 및 선박건조철 육상보관소에 사본의 형태로 추가 제공한 도면 및 서류</li> </ul> <p>검토는 적용되는 <u>규칙</u>이나 규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면/문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2018)</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2-2</b> <b>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요건</b></p> <p>1. 신조활동에 대한 검사 및 시험방안서</p> <p>1.1 조선소는 선박의 종류 및 설계를 고려하여 <u>우리 선급기술규칙 선급의 규칙</u>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계획서로 알려져 있는 문서화된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검사계획서는 시작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6)</p> <p>3. 선박건조철(SCF)</p> <p>3.1 &lt;현행과 동일&gt;</p> <p>3.1.1 다음의 설계특정정보가 선박건조철(SCF)에 포함되어야 한다:</p> <p>.3 구조상세 및 계산서를 포함하여 <u>선급기술</u>규칙을 대체한 방안. (2026)</p> <p>3.2 선박건조철은 신조시 3.1.1 및 3.1.2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sup>3)</sup> 되어야 하며 통상의 보관장소는 식별되어야 한다. (2018)</p> <p>&lt;현행과 동일&gt;</p> <p>(비고)</p> <p><sup>3)</sup> 검토란 신조검사의 마지막 절차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실시하는 선박건조철의 검사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부록 3.항 “선박건조철(SCF)”에서 요구하는 도면 과 서류 및</li> <li>- 선박건조철의 도면/문서 목록에 따라 조선소가 본선 및 선박건조철 육상보관소에 사본의 형태로 추가 제공한 도면 및 서류</li> </ul> <p>검토는 적용되는 <u>선급기술</u>규칙이나 규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면/문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u>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u>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 행

개정 사유

표 A 선박건조철(SCF)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목록

Tier II 항목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문서 예	통상 보관 위치
<b>설계</b>				
2	환경조건	• 가정된 환경조건	• 데이터 출처 또는 규칙을 참조하는 서술(특정 규칙 및 데이터) 또는; • 규칙에 따름(일자 및 개정판)	• 선박건조철-상세  본선
3	구조강도			
3.1	일반설계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 <u>규칙</u> 을 대체하여 적용된 요건	• <u>규칙</u> 을 대체하여 적용된 설계방법 및 대상구조	• 선박건조철-상세  • 용적도  본선
4	피로수명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 <u>규칙</u> 을 대체하여 적용된 요건	• <u>규칙</u> 을 대체하여 적용된 설계방법 및 대상구조	• 선박건조철-상세  본선
5	잔존강도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 선박건조철-상세  본선
7	구조잉여성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 선박건조철-상세  본선
8	수밀 및 풍우밀 보전성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 선박건조철-상세  본선
10	설계투명성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생략>	• 지적소유권에 대한 규정  본선
12	건조중 검사	• 건조중 적용된 검사체제(선박소유자 및 선급의 모든 예정된 건조중 검사를 포함)	• 적용된 <u>규칙</u> (일자 및 개정판) • 선체에 용접된 단강품 및 구조품 증서사본	• 선박건조철-상세 • 탱크시험방안서  본선 본선

-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

: 규칙 ⇒ 선급기술규칙

개 정 안

개 정 사유

표 A 선박건조철(SCF)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목록

Tier II 항목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문서 예	통상 보관 위치
<b>설계</b>				
2	환경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된 환경조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출처 또는 <u>선급기술규칙</u>을 참조하는 서술(특정 <u>선급기술규칙</u> 및 데이터) 또는; <u>(2026)</u></li> <li><u>선급기술규칙</u>에 따름(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ul>	<현행과 동일>
3	구조강도			
3.1	일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li><u>선급기술규칙</u>을 대체하여 적용된 요건 <u>(2026)</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선급기술규칙</u>을 대체하여 적용된 설계방법 및 대상구조 <u>(2026)</u></li> </ul>	<현행과 동일>
4	피로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li><u>선급기술규칙</u>을 대체하여 적용된 요건 <u>(2026)</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선급기술규칙</u>을 대체하여 적용된 설계방법 및 대상구조 <u>(2026)</u></li> </ul>	<현행과 동일>
5	잔존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ul>		
7	구조잉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ul>		<현행과 동일>
8	수밀 및 풍우밀 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ul>	<생략>	
10	설계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ul>		<현행과 동일>
12	건조중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조중 적용된 검사체제(선박소유자 및 선급의 모든 예정된 건조중 검사를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u>선급기술규칙</u> (일자 및 개정판) <u>(2026)</u></li> </ul>	<현행과 동일>

-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

: 규칙 ⇒ 선급기술규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2-3 선박건조철 양식 예</b></p> <p>1. Final Drawings:</p> <p>&lt;omitted&gt;</p> <p>And the followings are to be included.</p> <p>(8) Any alternatives to the <u>Rules</u>, including structural details and equivalency calculations*</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6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2018)</b></p> <p style="text-align: center;"><b>B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면제 또는 동등물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 (2024)</b></p> <p>2. 적용</p> <p>(7) &lt;생략&gt;</p> <p>(나) 구조시험을 받지 않는 탱크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선급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제조중등록검사 중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은 시작회의(Kick-off meeting)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는 <u>우리 선급 규칙</u>에 따라서 건조되고 우리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4)</p> <p style="text-align: center;"><b>C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비 적용대상선박 (2024)</b></p> <p>2. 적용</p> <p>(8) &lt;생략&gt;</p> <p>(나) 구조시험을 받지 않는 탱크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선급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제조중등록검사 중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은 시작회의(Kick-off meeting)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는 <u>우리선급 규칙</u>에 따라서 건조되고 우리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2-3 선박건조철 양식 예</b></p> <p>1. Final Drawings:</p> <p>&lt;same as the current Guidance&gt;</p> <p>And the followings are to be included.</p> <p>(8) Any alternatives to the <u>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u>, including structural details and equivalency calculations* <u>(2026)</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1-16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2018)</b></p> <p style="text-align: center;"><b>B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면제 또는 동등물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 (2024)</b></p> <p>2. 적용</p> <p>(7) &lt;현행과 동일&gt;</p> <p>(나) 구조시험을 받지 않는 탱크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선급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제조중등록검사 중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은 시작회의(Kick-off meeting)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는 <u>우리 선급 기술</u>규칙에 따라서 건조되고 우리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C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비 적용대상선박 (2024)</b></p> <p>2. 적용</p> <p>(8) &lt;현행과 동일&gt;</p> <p>(나) 구조시험을 받지 않는 탱크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선급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제조중등록검사 중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은 시작회의(Kick-off meeting)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는 <u>우리 선급 기술</u>규칙에 따라서 건조되고 우리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 〈부록 I〉

##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안)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사)한국선급

## - 주요 개정 내용 -

### (1) 2025.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회보(2025-1-E, 1/13)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 소급적용

-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요건 추가  
- IACS PR1B(Rev.7 June 2024) 및 PR42(New June 2024) 시행에 따른 대응

### (2) 2025.02.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회보(2025-1-E, 1/13)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 “부재의 쇠모한도” 요건 개정

### (3) 2026.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회보(2025-12-E, 9/19)로 발행됨)

- IACS QSCS관련  
- IACS PR 42(Rev.1 Nov 2024) 등 반영

#### (4)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용어의 정의 추가
- IACS UR Z1 (IMO Res.A.1186(33))의 일부 요건 최신화
- “오픈-톱(OPEN-TOP)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에 따른 연차검사 요건 추가
- 정기검사시 “탱크 압력시험 범위” 요건 명확화
- IACS UR Z3.2.4 요건 최신화
- “규칙”을 “선급기술규칙”으로 수정

# (1) 2025.01.01.일자 시행사항

(※ 회보(2025-1-E, 1/13)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건조계약일 기준) - **소급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lt;규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2)</b></p> <p>301. ~ 309. &lt;생략&gt;</p> <p>310. 타선급이 승인한 설계에 대한 인정 (2023)</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의해 이미 승인된 설계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절차요건(PR) 42 (Procedure for Assigning Class for a New Building project when the design is already approved by an Initial Societ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Rules an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a Class Society, a Shipyard and, if applicable, a Ship Owner)에 따른다. (2025)</p> <p><a href="#">&lt;새롭게 추가&gt;</a></p>	<p style="text-align: center;"><b>&lt;규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2)</b></p> <p>301. ~ 309. &lt;현행과 동일&gt;</p> <p>310. 타선급이 승인한 설계에 대한 인정 (2023)</p> <p>&lt;현행과 동일&gt;</p> <p><b>311.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지침 참조]</b></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 절차요건(PR) 1B 또는 42에 따라 국제선급연합회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의해 이미 승인 및/또는 검사된 재료 및 구성품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자체 선급기술규칙 또는 자체 선급기술규칙에서 허용하는 다른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2025)</p>	<p>기자재팀의 개정요청 공문 (MET4600-449-2024, 9 Dec. 2024) 및 이후 후속 에 쪽지(on 19 Dec. 2024) 에 의거</p> <p>: IACS PR1B(Rev.7 June 2024 및 PR42(New June 2024) 시행에 따른 대응</p>
<p style="text-align: center;"><b>&lt;적용지침&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3)</b></p> <p>302., 304., 306., 및 309. &lt;생략&gt;</p> <p><a href="#">&lt;새롭게 추가&gt;</a></p>	<p style="text-align: center;"><b>&lt;적용지침&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3)</b></p> <p>302., 304., 306., 및 309. &lt;현행과 동일&gt;</p> <p>311.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2025)</p> <p>1. 자체 선급기술규칙에서 허용하는 다른 요건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p>	

## (2) 2025.02.01.일자 시행사항

(※ 회보(2025-1-E, 1/13)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선급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 108. &lt;생략&gt;</p> <p>109. 부재의 쇄모한도</p> <p>선체 각 부재의 두께나 의장품의 치수 등이 쇄모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재의 건조 당시의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의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p> <p>다만, <u>건조 시에</u> 규정을 상회하는 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쇄모의 위치, 범위 및 종류 등에 따라서 적절히 참작할 수 있다. (2021)</p> <p>비고 :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b>규칙 2편 및 3편 등의 선급기술규칙</b>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lt;이하 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선급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 108. &lt;현행과 동일&gt;</p> <p>109. 부재의 쇄모한도</p> <p>선체 각 부재의 두께나 의장품의 치수 등이 쇄모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재의 건조 당시의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의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p> <p>다만, <u>건조 시에</u> 규정을 상회하는 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쇄모의 위치, 범위 및 종류 등에 따라서 적절히 참작할 수 있다. (2025)</p> <p>비고 :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b>규칙 2편 및 3편 등의 선급기술규칙</b>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자체식별 : 건조시 적용된 규정으로 도면 승인이 되었지만 이후 운항선에서 화물을 건조시보다 적게 싣고 운항 할 목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도 있으므로.</p> <p>(예, 건조시 화물창 inner bottom 두께가 20 mm로 승인됨 → 운항선에서 화물을 적게 적재하여 15mm로 재 승인 받음)</p>

# (3) 2026.01.01.일자 시행사항

(※ 회보(2025-12-E, 9/19)로 발행됨)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QSCS관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2)</b></p> <p>301. ~ 309. &lt;생략&gt;</p> <p><b>310. 타선급이 승인한 설계에 대한 인정 (2023)</b></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의해 이미 승인된 설계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절차요건(PR) 42 (Procedure for Assigning Class for a New Building project when the design is already approved by an Initial Societ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Rules an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a Class Society, a Shipyard and, if applicable, a Ship Owner)에 따른다. (2025)</p> <p><b>311.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지침 참조] (2025)</b></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 절차요건(PR) 1B 또는 42에 따라 국제선급연합회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의해 이미 승인 및/또는 검사된 재료 및 구성품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자체 선급기술규칙 또는 자체 선급기술규칙에서 허용하는 다른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p> <p>(상기 개정사항은 Circular (No. : 2025-01-E, 13<sup>th</sup> Jan, 2025)로 이미 발행된 사항임)</p> <p>&lt;이하 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2)</b></p> <p>301. ~ 309. &lt;현행과 동일&gt;</p> <p><b>310. 타선급이 승인한 설계에 대한 인정 (2023)</b></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u>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 이하 QSCS라 한다)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u>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의해 이미 승인된 설계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절차요건(PR) 42 (Procedure for Assigning Class for a New Building project when the design is already approved by an Initial Societ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Rules an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a Class Society, a Shipyard and, if applicable, a Ship Owner)에 따른다. (2026)</p> <p><b>311. 타선급이 승인 및/또는 검사한 재료 및 의장품에 대한 인정 [지침 참조] (2025)</b></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 절차요건(PR) 1B 또는 42에 따라 국제선급연합회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u>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u>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의해 이미 승인 및/또는 검사된 재료 및 구성품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자체 선급기술규칙 또는 자체 선급기술규칙에서 허용하는 다른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를 기록해야 한다. (2026)</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IACS PR42 (Rev. 1 Nov. 2024)의 Application 등 반영</p> <p>- "QSCS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을 개정안과 같이 Section 5에 적합한 선급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IACS 회원자격이 박탈된 RS(러시아 선급) 등록선이 IACS 선급에 선급이전 (TOC)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절차(UR, PR 등)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 (by 국제업무팀)</p> <p>: "QSCS"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b></p> <p>401. ~ 402. &lt;생략&gt;</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 (TOC (Transfer of Classification)) (2017) [지침 참조]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 등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p> <p>다만,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타선급선의 등록검사(TOC) 절차를 적용하지만 검사항목은 401. 제조후등록검사 요건을 적용한다.</p> <p>404. 복원성 (2023)  &lt;생략&gt;</p> <p>비고  1) &lt;생략&gt;</p> <p>2) “우리 선급이 인정할 수 있는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라 함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 또는 해당 기국(해당 기국이 검사권을 위임한 단체 포함)이 승인한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p> <p>&lt;이하 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b></p> <p>401. ~ 402. &lt;현행과 동일&gt;</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 (TOC (Transfer of Classification)) (2017) [지침 참조]  국제선급연합회(IACS)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 및 검사사항 등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6)</p> <p>다만,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타선급선의 등록검사(TOC) 절차를 적용하지만 검사항목은 401. 제조후등록검사 요건을 적용한다.</p> <p>404. 복원성 (2023)  &lt;현행과 동일&gt;</p> <p>비고  1) &lt;현행과 동일&gt;</p> <p>2) “우리 선급이 인정할 수 있는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라 함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와 <u>품질시스템 인증제도 QSCS의 부속서 1의 제 5절에 따라 QSCS 준수</u>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 또는 해당 기국(해당 기국이 검사권을 위임한 단체 포함)이 승인한 복원성시험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2026)</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IACS PR42 (Rev. 1 Nov. 2024)의 Application 등 반영</p> <p>: "QSCS"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p>

(4-1)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용어의 정의 (2020)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장,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6. &lt;생략&gt;</p> <p>17. 지적사항(Condition(s) of Class)이라 함은 선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특정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특정 조치, 수리 및 검사가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p> <p><u>&lt;새롭게 추가&gt;</u></p> <p>18. ~ 29. &lt;생략&gt;</p> <p>&lt;이하 생략&gt;</p> <p><u>&lt;참고&gt;</u>  현행 선급검사요령 6편 3장 “보고서 작성요령”, 202. Note(유의사항) 중 1. Actionable Note 및 2. Informative Note에서 상세한 정의 등을 확인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용어의 정의 (2020)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장,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6. &lt;현행과 동일&gt;</p> <p>17. 지적사항(Condition(s) of Class)이라 함은 선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특정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특정 조치, 수리 및 검사가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p> <p><u>18. 검사보고서의 유의사항(Note)이라 함은 선급유지를 위한 지적사항 (Condition of Class)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까지 또는 일정 간격으로 검사/확인이 필요한 사항, 새로운 선급기술규칙의 적용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6)</u></p> <p><u>19. 18. ~ 30. 29.</u> &lt;현행과 동일&gt;</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등록선업무팀의 개정요청 (CRR3100-305-2025, 12 Mar 2025)에 의거</p> <p>- 규칙 1편 1장 용어의 정의에서 "Condition of Class"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Note에 대한 정의는 없음.</p> <p>-&gt; 따라서, 외부용 문서인 규칙에 관련 정의 추가 필요.</p> <p>- 번호 조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선급검사</b> <b>제 2 절 연차검사</b></p> <p><b>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b></p> <p>1.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창구덮개, 창구코밍, 폐쇄장치, 의장 ~</p> <p>(1) ~ (11) &lt;생략&gt;</p> <p>(12) 선원의 보호 및 선원의 거주구와 업무구역 출입을 위해 설치된 보호난간, 갱웨이, 워크웨이 및 기타 <u>장치</u>에 대한 검사</p> <p>(13) ~ (17) &lt;생략&gt;</p> <p>(18) <u>선루단 격벽에 대하여</u> 검사하고 선수격벽 및 나머지 수밀격벽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p> <p>(19) ~ (20) &lt;생략&gt;</p> <p>(21) <u>해당되는 경우 감소된</u> 견현으로 항해하는 것이 허용된 선박의 특별요건에 대한 검사</p> <p>(22) ~ (38) &lt;생략&gt;</p> <p>&lt;이하 생략&gt;</p> <p><b>&lt;참고&gt;</b></p> <p>(12) Examining the guardrails, gangways, walkways and other means provided for the protection of the crew and <u>means for safe passage of the crew for gaining access to and from crew's quarters and working spaces</u>. - (현 IMO Res. A.1186(33) (LA) 1.2.2.13)</p> <p>(18) Examining the superstructure end bulkheads <u>and the openings therein</u>, and examining the collision and the other watertight bulkheads as far as can be seen. - (현 IMO Res. A.1186(33) (LA) 1.2.2.4 및 (CA) 2.2.2.4)</p> <p>(21) Examining, <del>when applicable</del>, the special requirements for ships permitted to sail with <u>type "A" or type "B-minus"</u> <del>reduced</del> freeboards. - (현 IMO Res. A.1186(33) (LA) 1.2.2.14)</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선급검사</b> <b>제 2 절 연차검사</b></p> <p><b>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b></p> <p>1.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창구덮개, 창구코밍, 폐쇄장치, 의장 ~</p> <p>(1) ~ (11) &lt;현행과 동일&gt;</p> <p>(12) 선원의 보호 및 <del>선원의 거주구와 업무구역 출입을</del> 를 위해 설치된 보호난간, 갱웨이, 워크웨이 및 기타 <u>수단 장차과 선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수단</u>에 대한 검사 (<u>LLC 66/88/03 Reg.25 and 25-1</u>) (<u>2026</u>)</p> <p>(13) ~ (17) &lt;현행과 동일&gt;</p> <p>(18) 선루단 격벽 <u>및 격벽에 있는 출입구</u>에 대하여 검사하고 선수격벽 및 나머지 수밀격벽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 (<u>LLC 66/88 regs.11 and 12</u>), (<u>SOLAS 74/88 regs.II- 1/11 and 14</u>) 및 (<u>SOLAS 74/06/17 regs.II-1/10, 11 and 12</u>) (<u>2026</u>)</p> <p>(19) ~ (20) &lt;현행과 동일&gt;</p> <p>(21) <del>해당되는 경우 감소된 A형 또는 감소된 B형</del> 견현으로 항해하는 것이 허용된 선박의 특별요건에 대한 검사 (<u>LLC 66/88/03 Reg.26 and 27</u>) (<u>2026</u>)</p> <p>(22) ~ (38) &lt;현행과 동일&gt;</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자체 식별</p> <p>- IACS UR Z1 (IMO Res. A.1186(33) (LA) 1.2.2.13 반영</p> <p>- IACS UR Z1 (IMO Res. A.1186(33) (LA) 1.2.2.4 및 (CA) 2.2.2.4 반영</p> <p>- 현 A.1186(33) (LA) 1.2.2.14 반영</p> <p>A형 선박 : 산적 액체 화물만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p> <p>B형 선박 : A형 선박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선박은 B형으로 간주 (B형, B-60형, B-100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39) 4편 10장 101.의 7항에 규정된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하고 추가설비 부호 "EQ-SPM"을 갖는 선박인 경우 일점계류용 계류장치 및 선체지지구조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동 및 변형상태를 점검한다. (2017)</p> <p>&lt;새롭게 추가&gt;</p> <p>&lt;이하 생략&gt;</p> <p>&lt;참고&gt; 적용지침 3편 부록 3-6“<u>오픈-톱(OPEN-TOP)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이 새롭게 제정됨</u>”</p> <p>: 하나 이상의 화물창을 창구덮개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물선(Cargo Ship) 또는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에 대한 추가 요건.</p> <p>: 2025년 5월 28일자 회보 발행 (2025년 6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되는 선박)</p> <p>- OPEN-TOP(CC)(Hold Nos. a, b, ...)를 부여함에 있어,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 (CC)를 제외하고, OPEN-TOP(Hold Nos. a, b, ...)로 부기 : Combustible Cargo</p> <p>* 관련 특기사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적용지침 3편 부록 3-6”의 적용에 대하여 <b>기국과 합의</b>되어야 함.</p> <p>* <b>적용지침 3편, 부록 3-6 “오픈-톱(Open-Top)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의 VI. 방화 1. 일반사항 (2) 및 (4)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음</b></p> <p>(2) 개방형 화물창 구역에 <b>화재 탐지 장치가 요구되는 경우</b>, 화재 탐지 장치는 특정 화물창 및 화물 배치와 환기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p> <p>(4) <b>물 분사 장치(또는 동등한 설비)</b>는 설치 완료 후 작동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p>	<p>(39) 4편 10장 101.의 7항에 규정된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하고 추가설비부호 "EQ-SPM"을 갖는 선박인 경우 일점계류용 계류장치 및 선체지지구조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동 및 변형상태를 점검한다. (2017)</p> <p>(40) <u>적용지침 3편 부록 3-6에 규정된 오픈-톱(OPEN-TOP)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의 특기사항으로 “OPEN-TOP(CC)(Hold Nos. a, b, ....)” 또는 “OPEN-TOP(Hold Nos. a, b, ....)”가 부여된 선박인 경우, 해당 화물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2026)</u></p> <p><u>가) 화물창 bilge 배수 설비 및 관련된 수위감지기에 대한 검사</u> <u>나) 방수구(설치된 경우)의 유효한 폐쇄 수단에 대한 검사</u> <u>다) 화재 탐지 장치(요구되는 경우 또는 동등한 설비)에 대한 검사</u> <u>라) 물 분사장치(또는 동등한 설비 설치된 경우)에 대한 검사</u></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적용지침 3편 부록 3-6 “<b>오픈-톱(OPEN-TOP)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b>”이 <b>새롭게 제정</b>되어 이에 따른 연차검사 요건 추가.</p> <p>- 특기사항(Special Feature Notations)</p> <p>- bilge 배수 설비(bilge dewatering system)</p> <p>- 수위감지기(water level detectors)</p> <p>- 방수구(freeing ports)</p> <p>- 화재탐지장치 (fire detection system)</p> <p><b>*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개정(안)으로 수정함.</b></p> <p>적용지침 3편, 부록 3-6, “오픈-톱(Open-Top)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 요건과 비교한 결과 다)와 라)의 요건에 대하여 불일치가 식별되어 수정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p> <p>17. 실행가능한 한 방화구조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동 및 자동 방화문을 검사하고 그 작동을 <u>확인한다</u>. 모든 통풍장치의 주요 흡입 및 배출구의 폐쇄수단을 시험하고 통풍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동력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수단을 시험한다.</p> <p>18. ~ 19. &lt;생략&gt;</p> <p>20. 해수관장차에서 모든 팽창 연결부의 상태에 대한 육안검사를 한다.</p> <p>&lt;이하 생략&gt;</p> <p>&lt;참고&gt;</p> <p>17. Confirming, as far as practicable, that no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structural fire protection, examining any manual and automatic fire doors and proving their operation, <u>testing the fire dampers of ventilation ducts</u> and the means of closing the main inlets and outlets of all ventilation systems and testing the means of stopping power ventilation systems from outside the space served. - (현 IMO Res.A.1186(33) (CA)2.2.2.28)</p> <p>20. <u>Examining visually the condition of all the non-metallic expansion joints in piping systems as appropriate, located below the deepest load waterline, and checking the relevant service record.</u> - (현 IMO Res.A.1186(33) (CA)2.2.2.32)</p>	<p>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p> <p>17. 실행가능한 한 방화구조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동 및 자동 방화문을 검사하고 그 작동을 확인한다. <u>환기 덕트에 설치된 화재댐퍼의 테스트와</u> 모든 통풍장치의 주요 흡입 및 배출구의 폐쇄수단을 시험하고 통풍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동력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수단을 시험한다. (2026)</p> <p>18. ~ 19. &lt;현행과 동일&gt;</p> <p>20. <u>관장치의 모든 비금속 팽창 연결부의 상태를 적절히 육안으로 점검하고, 최대 만재흡수선 아래에 위치한 팽창 연결부를 확인하며, 관련된 정비기록을 확인한다. (2026)</u></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IACS UR Z1 (IMO Res.A.1186(33)) 반영</p> <p>- 환기 덕트에 설치된 화재댐퍼의 테스트를 포함</p> <p>- 비금속 팽창연결부의 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만재흡수선 아래 위치한 팽창부 및 정비 이력 확인을 추가함.</p>

현 행

개정 사유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2. <생략>

403. 검사사항 (2018)

<생략>

(13) 탱크 압력시험 (2018)

(가) 표 1.2.6에서 정하는 탱크에 대하여 압력시험을 한다.

(나) 부양상태에서 선저부의 내부검사를 한 탱크는 압력시험을 부양상태에서 하여도 좋다.

표 1.2.6 정기검사 시 탱크 압력시험 범위

탱크	정기검사 구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모든 물탱크(평형수 겸용 화물창 포함 및 청수탱크 제외) 및 모든 화물탱크 (2018)	○	○	○	○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청수탱크, 빌지저장탱크(Bilge Holding Tank), 기관실 내 기타 탱크(ex, waste-/sludge-/drain-/bilge- etc.) (2022)	△	△	△	△

(비고)

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2. 탱크의 주위 벽은 공기관상단 또는 평형수겸용 화물창인 경우 창구상단 근처까지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청수탱크의 주위 벽은 사용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액면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등록선업무팀, 유선 요청  
on 11 Dec. 2024

- 요건 명확화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등록선업무팀, 유선 요청  
on 11 Dec. 2024

401. ~ 4.2. <현행과 동일>

403. 검사사항 (2018)

- 요건 명확화

<현행과 동일>

(13) 탱크 압력시험 (2018)

(가) 표 1.2.6에서 정하는 탱크에 대하여 압력시험을 한다.

(나) 부양상태에서 선저부의 내부검사를 한 탱크는 압력시험을 부양상태에서 하여도 좋다.

표 1.2.6 정기검사 시 탱크 압력시험 범위

탱크	정기검사 구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u>평형수 검용 화물창을 포함한</u> 모든 물탱크( <del>평형수 검용 화물창 포함 및 단</del> , 청수탱크 제외) 및 모든 화물탱크 (2026)	○	○	○	○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청수탱크, 빌지저장탱크(Bilge Holding Tank), 기관실 내 기타 탱크(ex, waste-/sludge-/drain-/bilge- etc.) (2022)	△	△	△	△
<p>(비고)</p> <p>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p> <p>2. 탱크의 주위 벽은 공기관상단 또는 평형수검용 화물창인 경우 창구상단 근처까지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단, 항내에서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지정된 화물창은 제외).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청수탱크의 주위 벽은 사용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액면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2026)</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절 입거검사</b></p> <p>603. 검사사항</p> <p>1. ~ 2. &lt;생략&gt;</p> <p>3. 타, 타 핀틀, 타두재, 커플링, 선미 골재 등을 검사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는 들어 올리거나 또는 검사용 판을 떼어내어 핀틀을 검사한다.” 타 베어링의 틈새간격을 계측하여 다음의 허용틈새 이상인 경우에는 베어링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의 압력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023)</p> <p>비고 :</p> <p>1)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를 들어 올리거나 또는 검사용 판을 떼어내어 핀틀을 검사한다.” 중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b>지침 1장 801.의 1항</b>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2)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에 대한 압력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중에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타의 기밀에 영향을 주는 수리를 한 경우 및/또는 <b>지침 1장 801.의 1항</b>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하 생략&gt;</p> <p>&lt;참고&gt;  <a href="#">Visible parts of</a> rudder, rudder pintles, rudder shafts and couplings and stern frame are to be examined. If considered necessary by the Surveyor, the rudder is to be lifted or the inspection plates removed for the examination of pintles. The clearance in the rudder bearings is to be ascertained and recorded. Where applicable, pressure test of the rudder may be required as deemed necessary by the surveyor. (Z3.2.4 of IACS UR)</p> <p>Z3 : Periodical Survey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and Related Items</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절 입거검사</b></p> <p>603. 검사사항</p> <p>1. ~ 2. &lt;현행과 동일&gt;</p> <p>3. 타, 타 핀틀, 타두재, 커플링, 선미 골재 등과 관련하여 <b>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b> 을 검사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는 들어 올리거나 또는 검사용 판을 떼어내어 핀틀을 검사한다.” 타 베어링의 틈새간격을 계측하여 다음의 허용틈새 이상인 경우에는 베어링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의 압력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026)</p> <p>비고 :</p> <p>1)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를 들어 올리거나 또는 검사용 판을 떼어내어 핀틀을 검사한다.” 중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b>지침 1장 801.의 1항</b>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2)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에 대한 압력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중에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타의 기밀에 영향을 주는 수리를 한 경우 및/또는 <b>지침 1장 801.의 1항</b>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하 현행과 동일&gt;</p>	<p>- 자체 식별 (요건 명확화)</p> <p>- IACS UR Z3.2.4 반영</p>

# (4-2)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규칙”을 “선급기술규칙”으로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용어의 정의 (2020)</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장,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4. 선급부호(class notations)란 선박의 특성을 선종을 포함한 문자나 번호 등으로 나타낸 표기법으로서 <b>특정규칙요건</b>을 만족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선종에 한정되거나 또는 이에 추가하여 표준선급요건을 초과하는 부가적인 자발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급부호는 등록부호, 선체/기관부호, 의장부호, 선종, 특기사항, 추가특기사항 및 추가설비부호로 구성된다.</p> <p>〈참조〉 ‘21년 규칙 1편, 1장 1절 101, “용어의 정의”에 선급기술규칙 도입됨</p> <p>3. 선급기술규칙(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이라 함은 규칙 및 지침을 포함한다. (2021)</p> <p>(1) 규칙(Rules)이라 함은 우리 선급에서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기기 등에 대한 선급등록 및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개정된 제 규칙을 말한다.</p> <p>(2) 지침(Guidances)이라 함은 규칙에 대한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선급등록</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용어의 정의 (2020)</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장,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4. 선급부호(class notations)란 선박의 특성을 선종을 포함한 문자나 번호 등으로 나타낸 표기법으로서 특정 <b>선급기술규칙</b> 요건을 만족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선종에 한정되거나 또는 이에 추가하여 표준선급요건을 초과하는 부가적인 자발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급부호는 등록부호, 선체/기관부호, 의장부호, 선종, 특기사항, 추가특기사항 및 추가설비부호로 구성된다.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b>102. 등록 및 선급의 유지 (2021)</b></p> <p>1. <u>우리 선급의 규칙</u>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건조되고 검사를 받은 선박은 선급을 부여하고 선명록에 등록한다.</p> <p>2. <u>우리 선급기술규칙</u>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21)</p> <p>3.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u>우리 선급 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p> <p><b>103. 규칙의 표준</b></p> <p>1. <u>우리 선급의 규칙</u>은 선박이 적당하게 적하되고 취급되며, 선급부호에 명시되지 않는 한, 특수하게 분포되거나 집중된 하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p> <p><b>104. 제외사항</b></p> <p>우리 선급은 트림(trim), 선체진동 또는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기술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이 있을 때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p> <p><b>105. 동등효력 (2023)</b></p> <p>이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이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p> <p>비고 :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2021)</p> <p>(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된 국제 기준(ISO, IEC 등) 또는 국가 기준(KS, JIS, ASME 등)으로서, <u>선급기술규칙</u>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p>	<p><b>102. 등록 및 선급의 유지 (2021)</b></p> <p>1. “우리 <u>선급기술규칙</u>” (이하 “<u>선급기술규칙</u>”이라고 한다) <del>선급의 규칙</del>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건조되고 검사를 받은 선박은 선급을 부여하고 선명록에 등록한다. (2026)</p> <p>2. <u>우리</u> 선급기술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21)</p> <p>3.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u>우리 선급기술</u>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026)</p> <p><b>103. 선급기술규칙의 표준 (2026)</b></p> <p>1. <u>우리 선급기술규칙</u> <del>선급의 규칙</del>은 선박이 적당하게 적하되고 취급되며, 선급부호에 명시되지 않는 한, 특수하게 분포되거나 집중된 하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6)</p> <p><b>104. 제외사항</b></p> <p>우리 선급은 트림(trim), 선체진동 또는 <u>선급기술</u>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기술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이 있을 때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026)</p> <p><b>105. 동등효력 (2023)</b></p> <p>이 <u>선급기술</u>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이 “이 <u>선급기술</u>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2026)</p> <p>비고 : “이 <u>선급기술</u>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2026)</p> <p>(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된 국제 기준(ISO, IEC 등) 또는 국가 기준(KS, JIS, ASME 등)으로서, <u>선급기술규칙</u>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절 선급부호</b></p> <p><b>201. 선급부호 [지침 참조]</b>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부여하는 선급부호는 다음에 따른다. (2020)</p> <p>2. 우리 선급은 이미 부여된 선급부호가 의도한 서비스(선종 및 용도), 항해 및/또는 그 외의 요구된 규칙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해서 언제든지 선급부호를 변경하거나 최신화 할 수 있다.</p> <p>(2) 선체부호 선체구조 및 강도가 다음의 조건으로 <u>우리 선급 규칙</u>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p> <p>(3) 기관부호 (주 추진기관을 갖는 선박에만 적용한다) (2021)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가 다음의 조건으로 <u>우리 선급 규칙</u>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p> <p>(4) 의장부호 선체 또는 기관의장이 다음의 조건으로 <u>우리 선급 규칙</u>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2)</b></p> <p><b>305. 공작</b> 제조중등록검사에 있어서는 선박건조의 착수 시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계의 운전상태에 있어서의 최종시험이 끝날 때까지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대하여 우리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칙 또는 승인된 도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불만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여야 한다.</p> <p><b>309. 공동선급선의 경우 (2025)[지침 참조]</b> 1. 각 선급은 두 선급과 조선소가 채택한 삼자 협정에 따라 다른 선급을 대신 하여 행동한다. 이 협정에는 도면 제출, 적용될 규칙, 선급간 도면승인 지적사항의 조율 및 결정 등 세부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삼자 협정의 최소 내용과 관련된 서식은 국제선급연합회(IACS) 절차요건(PR) 중 1B, Annex 5에 따른다. (2025)</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절 선급부호</b></p> <p><b>201. 선급부호 [지침 참조]</b>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부여하는 선급부호는 다음에 따른다. (2020)</p> <p>2. 우리 선급은 이미 부여된 선급부호가 의도한 서비스(선종 및 용도), 항해 및/또는 그 외의 요구된 <u>선급기술</u>규칙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해서 언제든지 선급부호를 변경하거나 최신화 할 수 있다. (2026)</p> <p>(2) 선체부호 선체구조 및 강도가 다음의 조건으로 <u>우리 선급기술</u>규칙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 (2026)</p> <p>(3) 기관부호 (주 추진기관을 갖는 선박에만 적용한다) (2021)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가 다음의 조건으로 <u>우리 선급기술</u>규칙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 (2026)</p> <p>(4) 의장부호 선체 또는 기관의장이 다음의 조건으로 <u>우리 선급기술</u>규칙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2)</b></p> <p><b>305. 공작</b> 제조중등록검사에 있어서는 선박건조의 착수 시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계의 운전상태에 있어서의 최종시험이 끝날 때까지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대하여 우리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u>선급기술</u>규칙 또는 승인된 도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불만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여야 한다. (2026)</p> <p><b>309. 공동선급선의 경우 (2025)[지침 참조]</b> 1. 각 선급은 두 선급과 조선소가 채택한 삼자 협정에 따라 다른 선급을 대신 하여 행동한다. 이 협정에는 도면 제출, 적용될 <u>선급기술</u>규칙, 선급간 도면승인 지적사항의 조율 및 결정 등 세부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삼자 협정의 최소 내용과 관련된 서식은 국제선급연합회(IACS) 절차요건 (PR) 중 1B, Annex 5에 따른다.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b></p> <p><b>510. 선급유지증명서 (2023)</b> 우리 선급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신청할 경우, 등록된 선박이 <u>규칙</u>에 따라 선급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선급유지증명서를 발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b></p> <p><b>701. 일반 (2020)</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소유자는 등록된 선박이 환경, 적재, 운항 및 그 외 <u>선급규칙</u>을 기본으로 한 요건에 따라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선원 또는 운항관리자에 의해 적합하게 선적, 운항 및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li> <li>선박소유자는 등록된 선박에 대한 선급증서의 유효성 보장을 포함하여 <u>선급규칙</u>에 요구되는 차기 검사 시까지 등록된 선박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li> </ol> <p><b>703. 검사협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급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유지를 위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u>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자는 검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준비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한 적합한 조명, 환기 및 접근설비의 업무환경과 안전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절 검사원의 권한과 의무 및 선급의 책임과 업무 범위 (2021)</b></p> <p><b>801. 검사원의 권한 [지침 참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선급 검사원은 선박의 선체, 기관, 기타 설비가 <u>우리 선급기술규칙</u>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손상 또는 마모되었을 때는 수리 또는 새 것으로 교환할 것을 검사 신청자에게 통고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b></p> <p><b>510. 선급유지증명서 (2023)</b> 우리 선급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신청할 경우, 등록된 선박이 <u>선급기술규칙</u>에 따라 선급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선급유지증명서를 발급한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b></p> <p><b>701. 일반 (2020)</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소유자는 등록된 선박이 환경, 적재, 운항 및 그 외 <u>선급기술규칙</u>을 기본으로 한 요건에 따라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선원 또는 운항관리자에 의해 적합하게 선적, 운항 및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6)</li> <li>선박소유자는 등록된 선박에 대한 선급증서의 유효성 보장을 포함하여 <u>선급기술규칙</u>에 요구되는 차기 검사 시까지 등록된 선박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2026)</li> </ol> <p><b>703. 검사협력</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급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유지를 위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u>선급기술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자는 검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준비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한 적합한 조명, 환기 및 접근설비의 업무환경과 안전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026)</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8 절 검사원의 권한과 의무 및 선급의 책임과 업무 범위 (2021)</b></p> <p><b>801. 검사원의 권한 [지침 참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선급 검사원은 선박의 선체, 기관, 기타 설비가 <u>우리 선급기술규칙</u>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손상 또는 마모되었을 때는 수리 또는 새 것으로 교환할 것을 검사 신청자에게 통고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6)</li> </ol>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b>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b>804. 선급의 범위 (2021)</b></p> <p>1. 우리 선급은 선박과 그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이나 기관장치 등의 무결성이나 안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증서, 보고서, 도면 또는 문서의 검토나 승인에 대한 유효성, 적용 및 해석은 전적으로 <u>우리</u> 선급기술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유일한 판단 권한은 우리선급이 가진다.</p> <p>2. 우리 선급기술규칙의 적용 및 해석은 우리 선급이 한다. 우리 선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u>규칙</u>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유효하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b></p> <p><b>901. 선급정지 및 회복</b></p> <p>2. &lt;생략&gt;</p> <p>(1) 선급부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도나 조건 또는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선 운항 등 <u>규칙</u> 요건에 적합하게 운항되지 아니한 경우</p> <p>(2) <b>우리</b> 선급 <u>규칙</u>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한 때</p> <p>6. 불가항력(force majeure) (2020)</p> <p>(4) &lt;생략&gt;</p> <p>(마) 선박이 합의된 기간 동안 <u>우리 선급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는 선장의 진술서</u></p> <p><b>902. 탈급 (2021)</b></p> <p>1. 다음의 경우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을 탈급시킬 수 있다.</p> <p>(5) 2장 103.에 규정된 선급유지를 위한 지정된 검사 시 <u>우리 선급의 규칙</u>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검사원이 보고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2 절 정부규정 및 국제협약 등 요건과 검사 (2022)</b></p> <p><b>1201. 정부규정 (2022)</b></p> <p>우리 선급기술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관계 제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p>	<p><b>804. 선급의 범위 (2021)</b></p> <p>1. 우리 선급은 선박과 그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이나 기관장치 등의 무결성이나 안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증서, 보고서, 도면 또는 문서의 검토나 승인에 대한 유효성, 적용 및 해석은 전적으로 <b>우리</b> 선급기술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유일한 판단 권한은 우리선급이 가진다.</p> <p>2. <b>우리</b> 선급기술규칙의 적용 및 해석은 우리 선급이 한다. 우리 선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u>선급기술규칙</u>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유효하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b></p> <p><b>901. 선급정지 및 회복</b></p> <p>2. &lt;현행과 동일&gt;</p> <p>(1) 선급부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도나 조건 또는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선 운항 등 <u>선급기술규칙</u> 요건에 적합하게 운항되지 아니한 경우 (2026)</p> <p>(2) <b>우리</b> 선급<u>기술규칙</u>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한 때 (2026)</p> <p>6. 불가항력(force majeure) (2020)</p> <p>(4) &lt;현행과 동일&gt;</p> <p>(마) 선박이 합의된 기간 동안 <b>우리 선급기술규칙 선급의 규칙</b> 및 규정을 준수하고,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는 선장의 진술서 (2026)</p> <p><b>902. 탈급 (2021)</b></p> <p>1. 다음의 경우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을 탈급시킬 수 있다.</p> <p>(5) 2장 103.에 규정된 선급유지를 위한 지정된 검사 시 <b>우리 선급기술규칙 선급의 규칙</b>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검사원이 보고한 경우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2 절 정부규정 및 국제협약 등 요건과 검사 (2022)</b></p> <p><b>1201. 정부규정 (2022)</b></p> <p><b>우리</b> 선급기술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관계 제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선급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11. 두께계측 절차 (2021)</p> <p>3. 두께계측 및 정밀검사 모든 종류의 검사, 즉 정기, 중간, 연차 또는 이와 같은 검사사항을 가지는 기타검사에서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지역의 구조에 대한 두께계측은, 표 1.2.9, 표 1.2.11, 표 1.3.2, 표 1.3.5, 표 1.3.8, 표 1.3.11 및 표 1.3.14에서 요구되는 경우, 정밀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2019)</p> <p>검사원은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 원격검사기술(RIT)을 고려할 수 있다. 원격검사기술을 이용하여 실시된 검사결과는 <u>규칙</u>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2017)</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절 연차검사</b></p> <p>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1.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창구덮개, 창구코밍, 폐쇄장치, 의장 및 관련 배관장치 등이 해당 <u>규칙</u>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2022)</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3 절 위험물 및 기타 특수화물을 적재하는 선박 (2023)</b></p> <p>1301. 검사기준 (2023)</p> <p>위험물 및 기타 특수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u>이 규칙</u>의 해당규정 이외에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관련 국제협약 및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선급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11. 두께계측 절차 (2021)</p> <p>3. 두께계측 및 정밀검사 모든 종류의 검사, 즉 정기, 중간, 연차 또는 이와 같은 검사사항을 가지는 기타검사에서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지역의 구조에 대한 두께계측은, 표 1.2.9, 표 1.2.11, 표 1.3.2, 표 1.3.5, 표 1.3.8, 표 1.3.11 및 표 1.3.14에서 요구되는 경우, 정밀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2019)</p> <p>검사원은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 원격검사기술(RIT)을 고려할 수 있다. 원격검사기술을 이용하여 실시된 검사결과는 <u>선급기술</u>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절 연차검사</b></p> <p>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1.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창구덮개, 창구코밍, 폐쇄장치, 의장 및 관련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3 절 위험물 및 기타 특수화물을 적재하는 선박 (2023)</b></p> <p>1301. 검사기준 (2023)</p> <p>위험물 및 기타 특수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u>아</u> <u>선급기술</u>규칙의 해당규정 이외에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관련 국제협약 및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b></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5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b></p> <p>15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2022)</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6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b></p> <p>16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2022)</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절 산적화물선</b></p> <p>2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유조선</b></p> <p>3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5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b></p> <p>15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6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b></p> <p>16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절 산적화물선</b></p> <p>2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 (2026)</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유조선</b></p> <p>302. 연차검사</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 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 (2026)</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b>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b></p> <p><b>402. 연차검사</b></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b>2장 201.</b>에 따른다.</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규칙요건</u>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b></p> <p><b>502. 연차검사</b></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규칙요건</u>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b></p> <p><b>602. 연차검사</b></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규칙요건</u>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절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b></p> <p><b>402. 연차검사</b></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b>2장 201.</b>에 따른다.</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 <u>(2026)</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b></p> <p><b>502. 연차검사</b></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u>(2026)</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b></p> <p><b>602. 연차검사</b></p> <p>1. 일반</p> <p>(2) 검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해당 <u>선급기술</u>규칙요건에 따라 유지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지고 ~. <u>(2026)</u></p>	<p>- 자체 식별 : 문구를 보면 선급기술규칙으로 이해되지만 규칙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b>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b> 있어 선급기술규칙으로 개정</p> <p>: 규칙 ⇒ 선급기술규칙</p>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국문)

(외부의견조회)

## 1편 부록 1-1 선급부호



2025. 08.  
선체규칙개발팀

# 개정의 배경 및 내용

## 1. 개정배경:

(1) MSC.1/Circ.1662 앵커 취급 위치 지침 (2026년 1월 1일 시행)

: SOLAS Chapter II-1/ Regulation 3-13에 의거한 앵커 취급설비 관련 추가 설비 부호 제정

- 선박안전법에서 앵커 취급원치의 승인을 위한 기준 제정 필요 여부: 해당함

## 2. 개정내용: 신규대비표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b>1.2 추가설비부호</b> 다음의 추가설비부호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할 수 있다.		<b>1.2 추가설비부호</b> 다음의 추가설비부호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추가설비부호</th> <th>적용규정</th> </tr> </thead> <tbody> <tr> <td>&lt;생략&gt;</td> <td>&lt;생략&gt;</td> </tr> <tr> <td>LI</td> <td>규칙 1장 307.에서 규정하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또는 규칙 3편 3장 104.에서 규정하는 "종강도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한 선박</td> </tr> <tr> <td>&lt;새롭게 추가&gt;</td> <td>&lt;새롭게 추가&gt;</td> </tr> <tr> <td>EQ-SPM</td> <td>규칙 4편 10장 101.의 7항에서 규정하는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한 선박</td> </tr> <tr> <td>&lt;생략&gt;</td> <td>&lt;생략&gt;</td> </tr> </tbody> </table>		추가설비부호	적용규정	<생략>	<생략>	LI	규칙 1장 307.에서 규정하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또는 규칙 3편 3장 104.에서 규정하는 "종강도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한 선박	<새롭게 추가>	<새롭게 추가>	EQ-SPM	규칙 4편 10장 101.의 7항에서 규정하는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한 선박	<생략>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추가설비부호</th> <th>적용규정</th> </tr> </thead> <tbody> <tr> <td>&lt;현행과 동일&gt;</td> <td>&lt;현행과 동일&gt;</td> </tr> <tr> <td>LI</td> <td>규칙 1장 307.에서 규정하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또는 규칙 3편 3장 104.에서 규정하는 "종강도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한 선박</td> </tr> <tr> <td rowspan="2">AH(F, P) (2026)</td> <td>앵커 취급설비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앵커 취급설비를 설치한 선박  <table border="1"> <tr> <td>F</td> <td>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td> </tr> <tr> <td>P</td> <td>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td> </tr> </table> </td> </tr> <tr> <td rowspan="2">AHT(F, P) (2026)</td> <td>앵커 취급설비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예인을 겸하는 앵커 취급설비를 설치한 선박  <table border="1"> <tr> <td>F</td> <td>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td> </tr> <tr> <td>P</td> <td>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td> </tr> </table> </td> </tr> <tr> <td>EQ-SPM</td> <td>규칙 4편 10장 101.의 7항에서 규정하는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한 선박</td> </tr> <tr> <td>&lt;현행과 동일&gt;</td> <td>&lt;현행과 동일&gt;</td> </tr> </tbody> </table>		추가설비부호	적용규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LI	규칙 1장 307.에서 규정하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또는 규칙 3편 3장 104.에서 규정하는 "종강도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한 선박	AH(F, P) (2026)	앵커 취급설비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앵커 취급설비를 설치한 선박 <table border="1"> <tr> <td>F</td> <td>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td> </tr> <tr> <td>P</td> <td>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td> </tr> </table>	F	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	P	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	AHT(F, P) (2026)	앵커 취급설비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예인을 겸하는 앵커 취급설비를 설치한 선박 <table border="1"> <tr> <td>F</td> <td>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td> </tr> <tr> <td>P</td> <td>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td> </tr> </table>	F	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	P	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	EQ-SPM	규칙 4편 10장 101.의 7항에서 규정하는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한 선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추가설비부호	적용규정																																					
<생략>	<생략>																																					
LI	규칙 1장 307.에서 규정하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또는 규칙 3편 3장 104.에서 규정하는 "종강도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한 선박																																					
<새롭게 추가>	<새롭게 추가>																																					
EQ-SPM	규칙 4편 10장 101.의 7항에서 규정하는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한 선박																																					
<생략>	<생략>																																					
추가설비부호	적용규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LI	규칙 1장 307.에서 규정하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또는 규칙 3편 3장 104.에서 규정하는 "종강도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한 선박																																					
AH(F, P) (2026)	앵커 취급설비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앵커 취급설비를 설치한 선박 <table border="1"> <tr> <td>F</td> <td>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td> </tr> <tr> <td>P</td> <td>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td> </tr> </table>	F	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	P	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																																	
	F	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																																				
P	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																																					
AHT(F, P) (2026)	앵커 취급설비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예인을 겸하는 앵커 취급설비를 설치한 선박 <table border="1"> <tr> <td>F</td> <td>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td> </tr> <tr> <td>P</td> <td>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td> </tr> </table>	F	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	P	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																																	
	F	지침 2장 2절의 등록검사에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F는 Fully를 의미한다.																																				
P	지침 2장 203.의 2항에 따른 제조후등록검사를 만족한 예인겸용 앵커 취급설비. 여기서 P는 Partially를 의미한다.																																					
EQ-SPM	규칙 4편 10장 101.의 7항에서 규정하는 일점계류용 계류장치를 설치한 선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선체사항		선체사항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국문)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부록 1-1

(외부의견조회용)



2026. 1.

선체규칙개발팀, 기관규칙개발팀

## 개정 배경 및 내용

### (1) 개정 배경

- 1)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케이블설치선(Cable Laying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선급 부호도 Cable Layer로 부여함.
- 2)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인력 이송선(Crew Transfer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선급 부호도 CTV로 부여함.

### (2) 개정 내용 : 신규 대조표 참조

### (3) 적용 일자 : 2026년 3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선종	특기사항		비고	선종	특기사항		비고	
<생략>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케이블부설선(Cable Laying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선급 부호도 Cable Layer로 부여함.</li> <li>-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인력 이송선(Crew Transfer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선급 부호도 CTV로 부여함</li> </ul>
26. Offshore Support Vessel	A	B		26. Offshore Support Vessel	A	B		
	Supply AH Tow HL WTIMR FFS1 FFS2 FFS3 FF Oil Spill Recovery <a href="#">&lt;신설&gt;</a> <a href="#">&lt;신설&gt;</a>	HDC( $P$ , Locations) HLC( $\rho$ , Tanks)			Supply AH Tow HL WTIMR FFS1 FFS2 FFS3 FF Oil Spill Recovery <a href="#">Cable Layer(2026)</a> <a href="#">CTV(2026)</a>	HDC( $P$ , Locations) HLC( $\rho$ , Tanks)		
<생략>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이하 현행과 동일>				

#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안)(국문)

(외부의견조회)

적용지침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2026. 1.

선 체 규 칙 개 발 팀

##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일자: 2026년 7월 1일 (건조되는 선박)

### (1) 선급부호 - 추가특기사항 변경

- “지침 8편 부록 8-9 화물선에 대한 추가 요건” 개정에 따른 선급부호 추가.

- AFP-C(FSC-Structure):

컨테이너 화물창의 화재 소화를 위한 담수 시, 설비 요건은 제외하고 구조 안전성 평가 요건만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여하는 부기부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선급부호</p> <p>1.1 선종 및 특기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120 335 1330 831"> <thead> <tr> <th data-bbox="120 335 400 383">추가특기사항</th> <th data-bbox="400 335 1330 383">적용규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0 383 400 430">〈생략〉</td> <td data-bbox="400 383 1330 430">〈생략〉</td> </tr> <tr> <td data-bbox="120 430 400 775"> AFP-C  AFP-C(1)  AFP-C(2)  AFP-C(3)  AFP-C(FSC)  〈신설〉  AFP-C(EV) (2022) </td> <td data-bbox="400 430 1330 775"> AFP-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절</b>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신설〉  AFP-C(EV):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2.의 3항</b>의 요건이 추가 적용된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 (2024) </td> </tr> <tr> <td data-bbox="120 775 400 831">〈생략〉</td> <td data-bbox="400 775 1330 831">〈생략〉</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계속)</p>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생략〉	〈생략〉	AFP-C AFP-C(1) AFP-C(2) AFP-C(3) AFP-C(FSC) 〈신설〉 AFP-C(EV) (2022)	AFP-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절</b> 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신설〉 AFP-C(EV):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2.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 적용된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 (2024)	〈생략〉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계속)</p>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생략〉	〈생략〉									
AFP-C AFP-C(1) AFP-C(2) AFP-C(3) AFP-C(FSC) 〈신설〉 AFP-C(EV) (2022)	AFP-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절</b> 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신설〉 AFP-C(EV):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2.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 적용된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 (2024)									
〈생략〉	〈생략〉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선급부호</p> <p>1.1 선종 및 특기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622 336 1832 869"> <thead> <tr> <th data-bbox="622 336 904 384">추가특기사항</th> <th data-bbox="904 336 1832 384">적용규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22 384 904 432">〈현행과 동일〉</td> <td data-bbox="904 384 1832 432">〈현행과 동일〉</td> </tr> <tr> <td data-bbox="622 432 904 815"> AFP-C  AFP-C(1)  AFP-C(2)  AFP-C(3)  AFP-C(FSC)  <u>AFP-C(FSC-Structure)</u>  (2026)  AFP-C(EV) (2022) </td> <td data-bbox="904 432 1832 815"> AFP-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절</b>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b>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u>AFP-C(FSC-Structure):</u>  <b>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2026)</b>  AFP-C(EV):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2.의 3항</b>의 요건이 추가 적용된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 (2024) </td> </tr> <tr> <td data-bbox="622 815 904 869">〈현행과 동일〉</td> <td data-bbox="904 815 1832 869">〈현행과 동일〉</td> </tr> </tbody> </table>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AFP-C AFP-C(1) AFP-C(2) AFP-C(3) AFP-C(FSC) <u>AFP-C(FSC-Structure)</u> (2026) AFP-C(EV) (2022)	AFP-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절</b> 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u>AFP-C(FSC-Structure):</u> <b>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2026)</b> AFP-C(EV):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2.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 적용된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 (2024)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AFP-C AFP-C(1) AFP-C(2) AFP-C(3) AFP-C(FSC) <u>AFP-C(FSC-Structure)</u> (2026) AFP-C(EV) (2022)	AFP-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절</b> 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b> 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u>AFP-C(FSC-Structure):</u> <b>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2026)</b> AFP-C(EV): 화물구역에 <b>규칙 8편 부록 8-9의 402.의 3항</b> 의 요건이 추가 적용된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 (2024)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